의안번호	제 180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0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제 출 자: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산림청에서 송부한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이용(입실)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객실 이용(입실)시간 조정(14시 → 15시) (안 제7조제1항)
-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 예외규정 개선 (안 제8조제2호)
- 관리자 예약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2)
- 예약사항의 매매. 교환·양도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9조제2항, 제13조제3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4시"를 "15시"로 한다.

제8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등에 의하여"를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하는 경우 권한이 오남용되거나 부당한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반기별 점검

- 제11조의3(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약자의 가족은 예약자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 직계 존·비속
 - 2. 배우자
 - 3. 형제자매
 - 4. 배우자의 부모
 - 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우선 예약의 경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예약자 본인이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 입장이 제한되어"로, "취소로"를 "취소된 것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용시간) ① 객실의 입실	제7조(이용시간) ①
시간은 사용일 <u>14시</u> 부터 22시까	<u>15</u> ^]
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11시	
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	
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	제8조(입장제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	2
한 사람. <u>다만, 입마개를 부착</u>	<u>다만, 「장애인복지</u>
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
외로 한다.	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	②
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u>등에 의</u>	<u>등의 방</u>
<u>하여</u> 징수할 수 있다.	<u>법으로</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1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0
	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

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하는 경우 권한이 오남용되거나 부당한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절차
-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반기별 점검

제11조의3(매매・교환 등 금지)

-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 약자의 가족은 예약자 없이도

<신 설>

제13조(위약금 처리) ①・② (생 략) 제13조(위약금 처리) ①・② (현

③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거나 제8 조에 <u>의하여</u>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④·⑤ (생 략)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 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 리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 야 한다.

- 1. 직계 존·비속
- 2. 배우자
- 3. 형제자매
- 4. 배우자의 부모
- 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우선 예약의 경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약금 처리) ①·② (현 행과 같음)

--- <u>따라 입장이 제한되어</u> ---

----- <u>취소된 것으로</u>

④·⑤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 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제1호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개정조례안은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 조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